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C2)731-6156 / 전송(02)731-6562
처리부서: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법무담당관 박돌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윤영권

문서번호 법무 11010-4730
시행일자 1998. 11. 18. (년)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기획예산실장	전결	박세오 /
법무담당관	박돌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 기 안	윤영권	

접수 제 1998. 11. 19 기획예산실장

제목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3건 발령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3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예규제652-654호

가. 발령예정일 : '98. 11. 20.(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52~654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2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등 3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1. 20.(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52~654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각 2부. 끝.

법 무 담 당 관

(제3안)

수신 : 농수산유통과장

제목 : 예규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등 3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1. 20.(금)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52~654호

첨부 : 발령목록 1부. 끝.

검열 1998. 11. 18. 심사관

서 울 특 별 시 장

받는 곳 :

예 규 발 령 목 록

□ 총 3건 (개정)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제652호	농수산유통과장
2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제653호	농수산유통과장
3	서울특별시노량진수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제654호	농수산유통과장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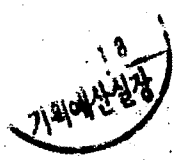

199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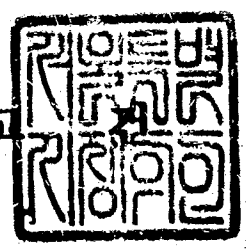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에게는 높은 수취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위해 위탁상장수수료를 1%인하(5% 4%) 함에 따라 고통의 공평분담 차원에서 관리공사 수익금인 시장사용료를 인하하고,

나.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의 개정('98.4.25)에 맞도록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월간 최저거래실적에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제22조제2항)

- ㅇ 1개월 미달 : 주의 ⇒ 1개월 무실적 : 주의
- ㅇ 2개월 연속미달 : 경고 ⇒ 2개월 연속무실적 : 경고
- ㅇ 3개월 연속미달 : 업무정지 10일 ⇒ 분기중 평균거래실적이 월간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월)
- ㅇ 3개월 연속무실적 : 허가취소 ⇒ 현행과 동일

나. 행정처분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제22조제3항의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이 조치할 수 있는 항목 조정

ㅇ 1개월 미달 : 주의	⇒	ㅇ 1개월 무실적 : 주의
		ㅇ 2개월 연속무실적 : 경고
ㅇ 2개월 연속미달 : 경고		ㅇ 분기중 평균거래실적이 월간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1차위반 : 경고

다. 시장사용료 요율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로 개정 (안 제4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③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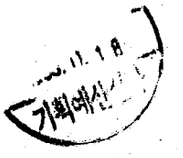

라. 기 타

① '98.6.11. '98.7.18 업무규정 개정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 받았음

② '98.7.10 업무규정 개정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받았음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중도매인이"를 "분기별로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여"로, "단, 동일처벌이 최근 1년간 3회째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 처분할 수 있다."를 "단, 위반행위일을 기준하여 최근 1년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상위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1호중 "1개월 미달"을 "1개월 무실적" 으로, 제2호중 "2개월 연속미달"을 "2개월 연속무실적" 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분기중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월)

제22조제3항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고"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1000분의 5로 한다."를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업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시장사용료요율 적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최저거래 금액) ①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류 / 금액 청과부류 / 2,500만원(법인 1억원) 수산부류 선어 및 패류 / 2,500만원(법인 1억원) 수산부류 건어 / 1,600만원(법인 6,400만원) 축산부류 / 2,000만원(법인 8,000만원)	제22조(최저거래 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중도매인이 전항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의·경고·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단, 동일위반이 최근 1년간 3회째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 처분할 수 있다. 1. 1개월 미달 : 주의 2. 2개월 연속미달 : 경고 3. 3개월 연속미달 : 업무정지 10일 4. 3개월 연속무실적 : 허가취소	②--- 분기별로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 ---단, 위반행위일을 기준하여 최근 1년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상위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1개월 무실적 : 주의 2. 2개월 연속무실적 : 경고 3. 분기중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월) 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중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시장이 할 수 있다.	③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고---
제49조(시장사용료) ① (생 략)	제49조(시장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시장사용료 요율은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②--- 1000분의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도매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사용료의 도매법인별 배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